

2024년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장학생 선발공고

서울장학재단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여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고취하고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24년 5월 7일
 (재)서울장학재단 이사장

1 장학금 개요

1. 선발규모 및 지원내용

선발인원	장학금액	지원기간	장학금 성격
120명	연간 3,000,000원 (150만원 * 2회 분할 지급)	2024년 1~2학기 (1년)	학업장려금

2. 지원대상: 아래 표의 ① ~② 항목 모두 충족해야 함

구분	신청자격
① 필수 지원자격	독립유공자(순국선열, 애국지사)의 증손자녀 이하(4대 ~ 6대) 후손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 *독립유공자 외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전몰군경 등)는 선발 비대상 ▶ 독립유공자 4대~6대 후손: 4대 후손(증손자녀), 5대 후손(현손자녀), 6대 후손(내손자녀)
② 지역 (국적/대학)	- 대한민국 국적자 - 서울 소재 대학의 정규학기 재학 학부생, 또는 서울 시민(의 자녀)으로서 비서울 소재 대학 정규학기 재학 학부생 ▶ 대학 소재지 및 대학 리스트: '[붙임 2] 지원 대상 대학교 명단' (별첨 파일) 참조 *원격대학은 비서울 소재 대학으로 분류함 ▶ 비대상: (2024년도 1학기 기준) 정규학기 마지막 학기 재학생, 초과학기생, 휴학생 등 *정규학기: '본 전공' 기준 적용 (예: 2년제 전문대학/4학기제, 일반 대학/8학기제 등) *초과학기: '본 전공'의 수업연한을 초과하는 학기

구분	신청자격
	▶ (예시) 수업연한이 4년(8학기)인 경우 - 이미 이수한 학기가 6학기이고, 당해학기가 7학기인 경우 : 당해학기 = 정규학기(7학기), 다음학기 = 정규학기(8학기) - 이미 이수한 학기가 7학기이고, 당해학기가 8학기인 경우 : 당해학기 = 정규학기(8학기), 다음학기 = 초과학기(9학기) - 이미 이수한 학기가 8학기이고, 당해학기가 9학기인 경우 : 당해학기 = 초과학기(9학기), 다음학기 = 초과학기(10학기)

2 장학금 신청 및 선발 절차

1. 선발절차 및 일정

신청서 접수 [온라인]	1차 심사 [사무국 심사]	2차 심사 [서류심사]	3차 심사 [최종심사]	최종 발표
5. 13(월) 10:00 ~ 5. 24(금) 17:00	재단 내부심사	외부 위원 심사	장학생 선정위원회	6월 중 예정

※ 선발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

2. 제출서류: ※ 필수 서류: ①~④, 해당자: ⑤~⑧

제출서류			발급처
① 자기소개서 • 재단 홈페이지 신청 화면에서 직접 작성			-
② 독립유공자 유족확인원 • 유족 확인서류는 p.10~11 [참고자료]의 Q2, Q5 필수 참조 • 후손 인정 범위: 증손자녀 이하(4대~6대 후손)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재학증명서			
⑤ 성적증명서 (2학년 이상 제출 필수, 1학년 제출 생략) • 국문 성적증명서 원본파일 업로드 ("증명서 발급" 필수) • 전체학기 누계 평점평균 점수와 백분위 성적 필수 표기 ▶ 필수정보: 문서확인번호(진위확인용), 학교 직인이 포함된 증명서 전체 페이지 ▶ 비대상: 정식으로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웹사이트 상의 성적 조회용/열람용 성적, 성적증명서 일부 페이지 제출 등			소속 대학
⑥ 경제상황 증빙서류 (택1)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생계/의료/보장시설/주거/교육급여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
	㉡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비대상: 장애인연금의 <차상위 초과 부가급여>에 체크된 자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비대상: 공고일(5.7) 전 자격 상실 신청 종료일(5.24) 후 자격 취득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소득분위) 통지서 ↳ 신청학기(2024년 1학기)의 발급번호, 학자금 지원구간, 기관 직인 필수 ↳ 반드시 본인 명의의 통지서만 인정 ↳ 개인 조회용 또는 열람용 화면 캡처본은 미인정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경제 상황 증빙서류 미제출 가능 (단, 미제출 시 소득 점수 최하점 부여)			

제출서류	발급처
⑦ 제적등본 (해당자만 제출) • 직계가족 증명서 발급 불가로 방계가족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로 후손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제적등본 내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 필수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
⑧ 주민등록등본 (해당자만 제출) • 비서울 소재 대학 지원자의 경우	
※ 서류 발급 인정기간: 모든 서류(②~⑧)는 장학금 공고일 2024.5.7.(화)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 ※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외 뒷자리 미공개로 발급 ※ 경제상황 증빙서류(⑥), 주민등록등본(⑧)은 가족 명의로 발급된 서류도 인정 - 가족 인정 범위: 미혼 - 부모 / 기혼 - 배우자 - 가족 인정 범위 외 명의자(형제, 조부모 등)의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3.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업로드	
신청기간	• 2024. 5. 13.(월) 10:00 - 5. 24.(금) 17:00
신청방법	• 재단 홈페이지(www.hissf.or.kr) → [장학사업] →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 [신청하기] 클릭 → 온라인 신청
서류 제출방법	• 제출서류는 홈페이지 내에서 첨부파일 형식으로 업로드
유의사항	• 신청기간 내에 첨부파일 업로드 및 신청서 접수를 모두 완료해야 함 (신청기간 이후 접수 및 서류 업로드 불가, 등기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 장학금 신청 마감일(5.24(금) 17시)까지 온라인 신청서 수정, 삭제 가능

4. 심사기준

구분	세부 내용	동점자 처리
1단계 사무국 심사	• 심사대상: 온라인 신청 및 제출서류 업로드 완료자 심사 (필수 제출서류 미업로드 시 심사 제외) • 평가항목: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제출 서류 적정성 검토 *가구당 선발 및 지원 인원은 1인으로 제한 *재혼가정 등의 경우 친양자 입양된 자녀만 인정 *필요시 서류 보완사항에 대해 심사 기간 중 별도 안내하며, 기간 내 미보완시 부적격 처리함	-

2단계 정량심사		구분 선발 인원 선발기준 1학년 36명 소득기준(소득낮은순 선발) 수급자차상위 >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순 *동순위자 발생 시 서류심사 대상으로 동시 선발 2학년 이상 108명 소득(50점) 및 성적(50점) 점수 총합 고득점자 순 *동순위자 발생 시 '동점자 심사기준' 적용 *1학년은 대학 성적 미보유로 동등한 기준으로의 심사가 어려움에 따라, 소득 기준만으로 선발 인원의 25%를 분리하여 심사·선발함. <td> (2학년 이상 해당) • 1순위: 소득(낮은순) • 2순위: 성적(높은순) • 위 기준으로 동순위 시 동시 선발함 </td>	(2학년 이상 해당) • 1순위: 소득(낮은순) • 2순위: 성적(높은순) • 위 기준으로 동순위 시 동시 선발함
3단계 서류심사		• 심사대상: 최종 선발인원의 1배수 (120명) • 외부위원이 자기소개서를 정성평가하여 고득점자순 선발 • 평가항목: 학업 및 자기성장의지(50점), 공익에 대한 소명의식(40점), 장학생 활동의지(10점) <td> • 1순위: 소득(낮은순) • 2순위: 성적(높은순) • 3순위: 선정위원회 </td>	• 1순위: 소득(낮은순) • 2순위: 성적(높은순) • 3순위: 선정위원회
4단계 장학생 선정위원회		• 종합 심의	-
심사 결격 기준	학사기준	• 정규학기 마지막 학기생, 초과 학기생, 휴학생 등 • 지원 비대상 대학 재학생, 대학원생 등	
	서류 미비 등	• 서류 미제출(업로드)자, 제출서류 미비자, 접수 기간 외 제출 • 재단에서 요청하지 않은 서류, 미인정 서류, 허위 서류 제출 • 제출서류 발급일 미준수 • 비공식 서류(개인 조회용 또는 열람용 등), 식별 불가능한 서류 제출 등	

※지원자 현황 및 심사 운영 상황에 따라 선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적격 지원인원이 서류심사 대상인원(1.2배수) 미달시 정량심사 없이 서류심사를 진행할 수 있음

5. 최종 결과 발표: 2024년 6월 중

-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장학사업]에서 최종 선발 여부 확인
-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선발결과는 유선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6. 유의사항

- 학교, 생년월일, 학번, 연락처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정보를 부정확하게 작성하거나 구비서류를 잘못 제출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반드시 신청 전 공고문과 참고자료를 숙지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장학재단 내 학업장려금을 지원하는 장학사업의 장학생으로 기선정자로서, 향후 장학금 중복 수혜가 예상되는 경우 장학금 신청은 자동 결격 처리됩니다.
- 신청기간 종료 후 신청서 수정 및 제출된 서류 반환은 일체 불가능합니다.
-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및 제출한 서류 등이 허위사실로 확인되면 장학생 선정은 취소됩니다.

3 장학생 활동 및 의무사항

1. 장학생 활동

구분	일정	활동명	확인방법
1학기	7월	장학증서 수여식 및 오리엔테이션*	- 일시: 7월 중 (추후 합격자 대상 별도 공지 예정) - 주요내용: 장학증서 수여 및 오리엔테이션(장학금 지급, 장학생 활동 안내 등) ※ 재단과 사전 협의 없이 무단 불참 시 장학금 자동 취소
		1학기 장학금 지급	- 지급방법: 학생 계좌 지급 - 제출서류: 장학생 동의서 ※ 차년도 이월 불가
2학기	7~11월	지역사회 선순환 프로그램 (봉사활동)	- 일시: 7~11월 내 (추후 안내) - 주요내용: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 선조의 업적을 느끼며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 (현충원 단체 봉사 등)
	9~10월	장학생 성장보고*	- 제출기간: 9~10월 내 (추후 안내) - 제출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 제출 - 주요내용: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생으로서의 사회 기여 및 공익적 활동 실천 성과, 학업 및 진로 활동 내용과 성과 등
	11월	2학기 장학금 지급	- 지급방법: 학생 계좌 지급 - 제출서류: 재학증명서 ※ 차년도 이월 불가
	12월	만족도 설문조사	- 일시: 12월 중 (추후 안내) - 제출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 제출 - 주요내용: 장학사업 운영 및 장학금 지원 전반 만족도, 개선요구 의견 등

※ 장학생 필수 활동: * 표

2. 장학생 의무사항 및 혜택

- 가. 증서수여식 불참 또는 장학생 동의서 미제출 시 장학생 자격 자동 취소됨.
- 나. 장학금 지원기간 중 장학생으로 선정된 대학에서 정규학기에 재학하여 학업을 수행해야 함.
- 다. 모든 장학생은 장학생 필수 활동에 반드시 참여해야 함.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반드시 재단과 사전 협의할 것.
- 라. 장학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서울시 장학생이 되기 위하여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고 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함.

- 마. 재단, 서울시, 정부기관 등 법령 또는 정책상 시행하는 자료요청 및 설문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함.
- 바. 장학금 지원기간 중 재단과 상시 연락 가능해야 하며, 연락 두절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사. 서울장학재단의 장학생은 <장학생 성장지원사업> 참여 자격 부여

장학생 성장지원사업(왓썸)이란?

서울장학재단 장학생이라면 누구나 재단이 주최하는 취업 멘토링, 원데이 클래스, 네트워킹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진로 역량 향상은 물론 자기계발, 장학생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으며, 직접 장학생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됩니다.

4 장학금 지급 및 반납

1. 지급시기: 1학기 7월, 2학기 11월 (예정)

2. 지급방법: 학생(본인) 계좌로 직접 지급

3. 장학금 결격사유

- 가. 장학금 수혜기간 중 휴학 또는 학업을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 경우
- 나. 장학금 수혜기간 중 지원 비대상 학교로 전출을 할 경우
- 다. 서울장학재단의 학업장려금성 장학금을 중복 수혜하는 경우
- 라. 장학생 의무사항을 무단으로 미이행하는 경우
- 마. 사업목적 또는 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하는 경우
- 바. 허위 사실,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 또는 장학금 수령한 경우

4. 장학금 지급중단 및 반환

- 가. 장학금 지급 결격사유가 발생한 즉시 재단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함
 - ※ '장학금 지원자격 변경 신청서(지정서식)' 제출
- 나. 장학금 지급 결격사유에도 불구하고 재단에 통보하지 않거나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 장학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함
- 다. 학업장려금은 장학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기간(학기) 중 지급된 장학금의 반환을 원칙으로 함. 단, 다음의 사유의 경우, 해당 사유 발생 기간에 지급된 장학금은 모두 반환해야 함
 - 해당 장학사업에서 제한하는 장학금을 중복수혜 하는 경우, 중복수혜 기간 중 지급된 장학금 반환
 - 허위 사실,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 또는 장학금 수령한 경우, 장학생 선정 이후 지급된 장학금 전액 반환
 - 장학생 의무사항 미준수(해외거주자(교환학생 등)의 경우, 장학생 필수 활동을 미이행하는 경우), 사업목적 또는 장학생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한 경우 장학금 지급 중단 또는 반환
 - 지원 비대상 학교로 전출할 경우, 장학금 지급 중단 또는 반환
 - 개인의 의사에 따라 장학금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학기 장학금 반납
 - ※ 장학금 지급 전 결격사유를 확인한 경우, 장학금 지급을 중단함

5. 장학금 반납 면제 기준

가. 재단이 정한 기준일로부터 60일 이상 장학사업 활동에 참여(대가성 장학금)하는 경우

※ 기준일: 최종합격자 발표일(1학기), 9월(2학기)의 첫째날

나. 반환대상자가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다. 반환 사유 발생 이후 반환대상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의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이에 준하는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6. 반납절차

장학금 반납 안내	장학금 반환	기한 내 미반환
- 반납대상자 문자 및 이메일 발송 - 주요내용: 반환사유, 반환금액, 반환기한, 입금계좌 등 안내, 반환약정서 발송	- 반환 약정서 제출 * 재단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 지정 계좌 입금 * 재단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처리 - 반납금 외 이자, 제재부가금 등 가산금 부과 - 독촉(납부최고)의 납부기간 경과 시 강제징수 절차 개시 - 미반환 기간 중 서울장학재단 내 모든 장학금 지급 중단 및 신규 장학금 신청 제한
장학재단	반납대상자	반납대상자

신청문의

📖 Q&A 게시판: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 > 게시판 > Q&A (평일 기준 2일 이내 회신)

☎ 유선문의 : 02-725-2257, 070-8667-3280 (문의시간: 평일 9:00~12:00, 13:00~18:00)

[참고자료] 자주하는 질문

Q1) 장학금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고 싶어요

A1) 장학금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1단계: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서울장학재단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장학사업] >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 [신청하기] 클릭
 ('공고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

- 2단계: 신청서, 자기소개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파일 형식: PDF, JPG, GIF, JPEG, PNG, HWP, HWPX, PPTX, DOC, XLS(X), ZIP / 10MB 이내)

※신청기간 내에 파일 업로드 및 신청서 접수를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Q2) 독립유공자 후손을 증명하는 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A2) <독립유공자 유족 확인원> 서류에 제시된 독립유공자의 유족과 학생 본인이 직계가족임을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분	증명서류(제출서류)
4대 후손 (증손자녀)	• 독립유공자 유족 확인원(부모님 성명 표기)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또는 부모님 기준 발급본 1부)
5대 후손 (현손자녀)	• 독립유공자 유족 확인원(조부모님 성명 표기) • 가족관계증명서(부모님 기준 발급본 1부)
6대 후손 (내손자녀)	• 독립유공자 유족 확인원(증조부모님 성명 표기) • 가족관계증명서(조부모님 기준, 부모님 기준 발급본 각 1부(총 2부) 필요)

Q3) 휴학생 및 대학원생은 지원 불가한가요?

A3)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의 경우, 서울 소재 대학의 정규학기 재학 학부생, 또는 서울 시민(의 자녀)으로서 비서울 소재 대학 정규학기 재학 학부생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휴학생 또는 대학원생은 지원 불가**합니다.

(지원 가능 대학 리스트는 '지원 대상 대학교 명단' (별첨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4)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는 해당 안되나요?

A4)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은 '독립유공자(애국지사, 순국선열)'의 후손분들이 장학금 신청대상입니다. 참전유공자 등 다른 국가유공자는 장학금 선발 대상이 아닙니다.

Q5) 독립유공자 유족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A5) 직계가족의 독립유공자 유족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없는 특수한 상황(직계 가족의 사망, 행방불명, 국외이주 등)에 있는 경우 대체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대체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을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대체 인정	① 독립유공자 유족(손자녀)임이 확인 가능한 국가보훈처 공문 ② 독립유공자 유족(손자녀) 명의의 보훈급여금 지급확인원 ③ 독립유공자 유족(손자녀)임을 확인하는 국민신문고 답변서 ※ 3대 후손(손자녀)에 대한 증빙서류에 한하여 인정함
대체 불인정	① 신청인이 증손자녀 이하 후손임이 명시된 국가보훈처 공문 (반드시 손자녀 인정 공문+가족관계증명서로 증빙 필요) ② 독립유공자 유족증 및 훈장증 등 ③ 제적등본과 증빙자료 상 생년월일, 이름 일치 여부가 확인 불가한 경우 ④ 기타 증빙자료(훈장, 사진, 기록 등)

Q6) 독립유공자 유족임을 확인하는 공문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A6) 지방보훈지청(서울지방보훈청 등)에 **독립유공자/유족 등록확인 공문** 발급을 요청하시면 되며, 공문 발급 시 **대상구분(애국지사, 순국선열), 보훈번호, 유공자/유족 성명, 생년월일, 독립유공자와의 관계, 등록일자**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서울지방보훈청

국가보훈처

수신 귀하

(경유)

제목 국가유공자 등록 사실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귀하께서 요청하신 님의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사실 확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대상 구분	보훈 번호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적용대상 법조항
		성명 (생년월일)	관계	성명 (생년월일)	등록일 (사망일)	
순국선열 유족			손자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1호

끝.

Q7) 제적등본은 필수로 제출해야 하나요?

A7) 2008년 이전 사망자 또는 직계가족의 행방불명,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직계가족의 독립유공자 유족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없어 **방계혈족의 서류로 증명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는 **선택서류**입니다.

주민센터에서 **관계증명을 위한 제적등본** 발급을 요청하시고 독립유공자 유족확인원으로 확인 가능한 **방계혈족과 신청자 본인**에 해당하는 **이름 위에 형광펜 등으로 표시**해달라고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Q8) 선순위 유족도 아니고 외가 후손인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8)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은 선순위 유족 여부, 외손여부 등과 관계없이 독립유공자의 4대 ~ 6대 후손이시고, 관계를 증명하실 수 있으시다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단, 장학금 지원은 학생 본인의 부모(1가구) 기준 1인만 가능합니다.

Q9) 경제상황 증빙서류가 없어도 지원 가능한가요?

A9) 경제상황 증빙서류가 없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단, 경제상황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선순위가 없거나 기본점수가 부여되므로 다른 지원자에 비해 선발에 불리합니다.
경제상황 증빙서류를 같이 제출하시는 것이 선발에 유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0) 국가장학금 또는 외부의 다른 장학금과 중복지원 가능한가요?

A10)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은 재단 외부 장학과 중복수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 당해 연도 서울장학재단의 학업장려금 간 중복수혜는 불가합니다.

Q11) 성적증명서에 백분위 점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A11) 대학의 성적 관련 부서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성적증명서에 **백분위 점수, 담당자 성함,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서명**을 수기로 기재 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Q12) 편입생인 경우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어떻게 제출하나요?

A12) 기편입자로서 현재 대학의 정규학기 성적이 있는 경우, 현재 소속 대학의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편입자로서 현재 대학의 정규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현재 소속 대학의 재학증명서, 전적 대학의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